

#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안

(강창남 의원 대표발의)

의안번호	제102호
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3. 11. 15.

발 의 자 : 강창남, 김재권, 이에숙 의원

## 1. 제정이유

- 이 조례는 쌈지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쌈지공원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(안 제3조)
- 군수는 쌈지공원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군수는 관리자에게 쌈지공원 관리항목 및 관리세부지표를 제공토록 함(안 제5조)
- 쌈지공원 관리우수공원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0조, 제38조의 2
-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2014년 추경 반영계획 15,000천원

다. 합 의 : 산림녹지과와 합의되었음

라.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3. 11. 15. ~ 11. 20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: 생략

##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쌈지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쌈지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, 자투리땅 등에 조성·관리하는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.

2. “공원시설물”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

가. 화단·분수·조각·수목 등 조경시설물

나.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

다. 그네·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물

**제3조(지원)** ① 군수는 쌈지공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4조(관리자 지정)** ① 군수는 쌈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각종 사회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쌈지공원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관리자는 쌈지공원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의 의무를 가진다.

**제5조(쌈지공원 관리항목)** 군수는 관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쌈지공원의 관리항목 및 관리세부 지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6조(쌘지공원 관리평가) 군수는 관리상황을 평가하여 관리우수 쌘지공원을 선정하여 다른 관리자에게 홍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도모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